

“長短點취사선택을 위한 활발한研究를”

— 韓·日兩國의 중등교사양성제도 및 교육내용 비교연구

이 글은 공주사대 과학교육연구소刊「과학교육연구」 최근호에서 전재한 것임. <편집자註>

趙泰璣

〈公州師範大學 物理教育科 교수〉

현재 많은 선진국들은 國政의 중요 과제로서 教育改革의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각 國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각각 그 나라의 고유한 사정에 따라서 각양각색 이지만 공통된 과제가 존재한다. 그것은 產業構造의 변화, 情報化의 진전등에 상징되는 급격한 사회의 변동에 대한 교육의 재검토 문제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선진대열에 진입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교육제반 문제해결을 선진국에 모방하여 따라가고만 있을수는 없는 일이다. 한 나라의 발전은 교육의 성패로 좌우된다고 해도 틀림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國民教育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유능한 教師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世界 제2차대전이 끝나고 光復의 기쁨과 아울러 새나라 건설을 위한 독자적인 教育方式이 필요했던 시기에 폐전국 日本이나 우리나라를 다같이 美國의 영향을 받아 學制, 教育의 내용등을 정립시킬수가 있었고 특히 科學教育에 있어서는 1960년대의 科學教育課程의 개편 혁신등으로 새로운 내용, 방법 등으로 일취월장 성장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他國의 모방을 잘 한다는 이웃나라 日本國은 이제 西方 先進 5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선진국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실정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先進國教育方法을 도입하여 우금 1세기가 넘는 그들의 교육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 할 수가 있다.

本研究에서는 日本의 발전적인 教育의 주역들, 즉 教師들이 어떻게 양성되어 왔는가 하는것을 조사해 보고, 우리나라의 現 教師養成制度와 비교하여 보면서 우리의 教師養成度上의 취약점을 찾아 더 좋은 개선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울러 教師養成을 위한 교육의 내용도 제도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日本 몇몇 大學의 教育課程과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教師養成을 위한 教育課程과 비교하여 보았다.

◇ 日本의 教師養成制度 改革

• 背景

1943년경 日本은 師範學校를 개혁하여 豫科2

年 本科3年の 專門學校 정도로 승격시켰다. 이때에는 師範學校 이외에도 青年師範學校, 高等師範學校, 女子高等師範學校, 實業學校教員 養成所등이 있었으며 모두 國立이었다. 이들 가운데 청년사범학교를 제외하면 모두가 중등교원 양성기관이다. 청년사범학교는 청년학교의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1944년 경에 설치한 것이고 고등사범학교, 여자고등사범학교는 중학교 및 고등여학교 등의 교원을 양성하고 중등교원 양성의 중추를 이루고 있었다.

1945년까지 사범학교, 고등사범학교는 중학교원은 특정학교에서 양성한다는 취지하의 국책학교였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비가 지급되고 졸업후 일정기간의 의무적인 교직복무가 과해졌다. 그러므로 이들 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재의 등용문이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교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이들 학교는 모두 군대식 교육을 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양성된 교원은 명랑성이 부족하고 시야가 좁으며 위선적이며 비굴, 편협한 성격을 지닌다는 평이 있었다. 따라서 그때까지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교사양성을 해왔던 諸教師養成機關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여 개방적인 교원양성과 그에 따르는 教員養成制度의 개혁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었고 또한 교원양성의 수준향상과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설치 요구가 크게 일어났다.

1945년 하반기에 聯合國最高司令部 總司令官의 지시에 의해 교육개혁이 단행되었는데 교육제도의 관리정책으로 軍國主義的 超國家主義的教育의 철저한 배제로 교육민주화를 시킬것, 이전의 教員들에 대한 適格審查를 통한 軍國主義教師의 추방, 國家神道 神社神道를 국가로부터 분리할것, 그리고 修身, 日本歷史, 地理교육을 중지시킬것 등이며, 이들 科目에 대한 수업중지 및 교과서의 회수·폐기 등을 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教員養成諸學校에서는 軍事教育廢止 이외에도 軍國主義的 제교육내용이 삭제되어 교육과정의 일대개혁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1946년 日本에 美國의 教育

師節團은 모든學校의 교원양성에 專門的인 準備教育이 必要하다고 지적하고 教員養成教育은 大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一般교양, 전문지식, 교직교육의 3중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사절단에 협력하기 위한 教育家委員會는 師範學校를 教育大學으로하고 입학자격은 타 大學과 동등하게 할 것, 教育大學 출신은 少學校 및 中學校 教員資格을 부여하며 기타 대학 출신자에게도 試補期間을 두고 資格을 부여할것, 高等學校 教員資格은 大學卒業後 一定期間 專門敎科의 연구에 종사시켜 國家考試에 합격한 자에게 인정할것 등을 내세웠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1946년 8월 內閣에 教育刷新委員會가 설치되었다.

• 教員養成制度의 改革

1946년 教育刷新委員會는 6·3·3·4制의 學制案을 내고 교원양성은 綜合大學 및 單科大學에 教育學科를 두어 양성함을 원칙으로 하는 제안을 하였다. 1947년 3월 “學校教育法”이 제정되고 교원양성의開放制原則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원칙일뿐 1947년부터 新學制가 실시되어 義務制의 중학교가 발족함에 따라 소요되는 다수의 교원을 어디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때에 學藝大學案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綜合大學의 教育學部 大學의 教育學科, 教育大學에 병행하는 教員養成機關으로서 등장된 것이다. 제안의 취지는 “국민일반의 교양을 주로하는 대학”이라고 밝히고 있다. 많은 논란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教育大學 教育學部를 교원양성목적 대학으로 하는것은 일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綜合大學 및 單科大學의 教育學科와並行하여 “教育者養成을 主로하는” 學藝大學을 내세웠다. 이로 因하여 學藝大學이 교원양성기관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案에 따르면 高等學校 教員은 주로 大學卒業者 중에서 채용한다고 되어 있다.

요약해서 이 建議案은 ① 學藝大學을 설치하여 小學校·中學校의 교원을 양성한다. ② 一般

大學의 졸업자도 교원으로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원으로 채용한다. ③ 舊 教員養成學校 중에서 적당한 것은 學藝大學로 개편할 것 ④ 教員養成을 위한 學費支給制와 服務義務制는 폐지한다. ⑤ 教員養成 國·公·私立 區別없이 어떤 학교에서도 가능할 것 ⑥ 學藝大學의 前期修了者에게는 小學校 教員資格을 부여한다. 이상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안이 新制大學에서의 교원양성의 기본이 되었다.

1949년 國立大學校에 學藝學部 또는 教育學部가 설치되고 또는 단독의 학예대학이 설립되었다. 舊制 高等學校와 師範學校의 병합으로 된 곳에서는 대다수 文理學部로 전환되어 일반교양도 담당하고 그런곳은 教育學部가 설치되었으며 기타의 국립대학에서는 學藝學部가 설치되고 학예학부가 일반교양까지 담당하고 1일제의 帝國大學의 소재지등 특별한 지역에서는 一市道一大學의 원칙을 적용시키지 않고 독립하여 학예대학을 설치했다.

教員養成制度의 개혁으로 新學制에서는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特定學校는 세우지 않기로 하고 대학에서 교원으로서 필요한 과목의 이수만 하면 教員免許法에 의하여 자격면허를 주게 되었다. 그리하여 學藝學部·教育學部에서는 이 법에 따라 과목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외에 教員養成의 관점에서 教育課程을 편성하고 일반대학에서는 교직과정을 설치 운영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1949년 제정된 教員免許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이 法은 大學을 제외하고 幼稚園에서 高等學校에 이르는 國·公·私立의 각 학교의 校長·教員 및 教育위원회의 교육장 그리고 지도주사(장학사)에 적용된다.

② 免許狀의 종류를 舊制보다 多種類로 한다. 그 목적은 教育職員의 충족을 원활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研修를 통하여 地位向上을 도모한 것이다. 또한 免許狀의 종류의合理的 분류로 將來 職階制를 정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된다.

③ 免許狀은 大學에서 일정한 단위를 취득한者 또는 教育職員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④ 免許狀의 授與權은 各 都道府顯에 일임(國·公立學校의 校長과 教員 및 教育長 指導主事·都府顯의 教育委員會, 私立校의 校長 教員은 都道府顯 知事).

이와 같은 新制大學案에 따라 교원양성을 주로하는 조직으로서 7개 학예대, 19개 학예학부, 26개의 교육학부가 설치되었으며, 특정지역(北海道, 東京, 愛知, 大阪, 京都, 福岡)에는 단독 학예대가 설치되었으며, 奈良女高師는 奈良女子大學으로 되어 예외적으로 單科 學藝大學이 설립되었다. 高師, 女高師에서 大學으로 된 곳에서는 東京教育大, 橋島大 金澤大는 교원양성을 주로 하는 교육학부가 되었다.

그후 學藝大學 學藝學部의 명칭은 1966년경 教育大學, 教育學部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東京學藝大學은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小學校, 幼稚園教師 등 現職教員의 전문적인 능력배양을 위한 教員大學院이 1978년경 설립 되었는데 兵庫顯의 司町, 神僕顯의 上越市, 德島顯의 鳥門市의 3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 教員養成制度 改革의 問題點

일반대학에서 교원양성을 하게 되자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그중의 몇가지를 들면, ① 免許狀의 남발 ② 教育實習校의 확보의 곤란 ③ 學校實習의 형식화 ④ 教育實習을 둘러싼 문제(자격취득을 위한 최저한도의 소요단위를 형식적으로 수득, 교원으로서 필요한 교육이 명목적으로만 이루어짐, 教職에 대한 직업의식뿐만 아니고 교원에 필요한 學力, 指導力마저 충분하지 못한 실정) ⑤ 大學을 나오는 계제에 教職에 대한 의식도 없이 免許狀을 취득해두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 日本의 中等學校 教員養成 過程

• 中等學校 教員養成 過程의 概要

日本의 중등학교 교원양성은 고등사범학교 편제로 비롯된다. 1886년에 東京高師가 설립되고, 1902년에 廣島에 또 하나의 고등사범학교가 세워졌고 여자고등사범학교의 경우는 1894년 東京에 1908년에는 奈良女子高等師範學校(4년제)가 설립되어 중등교육의 수급원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가 官立學校였고 豫科1年 本科3年을 本體로 高等교육의 졸업자가 중등학교 교원을 지망하는 자를 위한 연구과(1년~2년) 및 중등학교 교원보충을 목적으로 專修과가 설치되어 있었고 本科 및 專修과의 과목중 특정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選科生(2년~4년이상) 制度도 있었다. 또한 1911년에는 改正令으로 專攻科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다. 1915년 改正令으로 학과구성에 대해서는 文科, 理科로 대별하고 각각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할 것과 門·理兩科 이외에 特科로서 東京高師에 체육과를, 廣島高師에 교육과를 두기로 하였다. 이 가운데 체육과는 1921년부터 特科에서 벗어나 文科·理科와 똑같은 위치를 갖게 되었다. 실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각 科를 다시 主要科의 배치에 대응하여 3부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廣島高師에서는豫科·本科制를 개혁하여 學科·部를 통하여 4年修業年限으로 하고 東京高師는豫科1年, 本科年制 유지하였으나 1926년 東京高師도豫科制를 폐지하고 4년을 일관하는 수업년한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를 正規學校卒業生 만으로는 전국적인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1922년 東京高師에 第一監視教員養成所, 廣島에 第二監視教員養成所를 설치 운영하였다.

1918년 東京高師에는 專攻科 修身教育部, 廣島高師에는 德育專攻科가設置되었는데 1930년兩校의 專攻科가 文理科 大學으로 승격하고 역으로 고등사범학교가 文理科大學으로 附屬되는 形態가 되었다. 이 文理科大學은 帝國大와는 달리 女學生의 入學이 허용되었다. 終戰前의 이와 같은 文理科大學 출신과 高等師範學校 출신들이 戰後 新制의 교원양성의 개발에 따른各新制大學(教育系 大學)에 공헌하게 되었다.

한편 1944년에는 金澤에 高等師範學校가 1945

년, 즉 二次大戰의 終戰直前에는 罔崎에, 그리고 廣島에는 여자고등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로서 고등사범학교는 4개교, 여자고등 사범학교는 3개교가 되었으나 1945년 終戰以後 學制改革으로 大學으로 승격되어 東京高師는 東京教育大學으로(현재의 築波大), 東京女子高師는 お茶の水女子大로, 그리고 廣島高師는 廣島大, 奈良女高師는 奈良女子大, 金澤高師는 金澤大로, 罔崎高師는 現 名古屋大로 편입되었다.

新制入學案에 따라 廣島大學의 경우 1945년 이전에 설치되었던 文理科大學, 고등사범학교, 여자고등 사범학교, 사범학교, 청년사범학교(두 사범학교는 1943년경 전문학교정도로 승격되어 있었음)가 합쳐서 綜合大가 되었고, 綜合大 内에 教育學部를 설치했으며(1949) 이것이 다시 教育學部와 學校教育學部로 갈라졌다. 학교교육학부에서는 주로 의무교육(소학교·중학교)의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碩士과정의 학교교육 연구과가 설치되어 있고 教育學部 内에는 教科教育學科가 설치되어 있어서 고등학의 교원양성을 주로 하게 되어 있다. 理學部 學生들에게도 소정의 교직과목 이수자에게 면허장이 주어지고 있다. 教科教育學科는 종래의 高等學校 教員養成機能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적으로 教科教育의 원리, 내용, 방법의 연구와 教科教材內容의 개발을 주안으로하여 教育學, 心理學과 긴밀하게 연계시켜 연관된 전문분야를 종합적이고 임상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高等師範學校

(1) 教育內容의 特色

그 당시의 고등사범학교의 교과과정은 文科의 學科목은 「修身, 教育學, 心理學, 論理學, 國語, 漢文, 英語, 地理, 歷史, 法制經濟, 哲學, 言語學, 數學, 體操」이었고, 理科의 경우 「修身, 教育學, 心理學, 論理學, 數學, 生物學, 化學, 植物學, 動物學, 鑽物學, 地質學, 農學, 地理, 天文氣象, 圖畫, 手工, 國語, 英語, 體操」로 되어 있었다.

東京高師에서는 12분과의 公通학과목으로서 수신, 교육학, 심리학, 논리학 및 국어, 영어, 체

육을 課하고 廣島高師에서는 수신, 교육학, 체육을 공통학과목으로 하는 외에 생물학을 심리학의 기초과목으로 하여 공통으로 課하고 문과에서는 법제경제를 필수과목으로 했다. 그리고 精究科目制를 채택하여 주요과목中 학생각자의 자발적 욕구에 따라 제목을 선택시켜 教官 指導下에 주 2시간 이상 수준높게 연구하여 개성발휘의 기회를 주었다.

이와 같이 東京·廣島의 兩高師에서는 각기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종전의 전문별의 學部制를 지양하고 文理二分科制를 채용한 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고사교육의 특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기본정신은 고등사범교육이 고등보통교육에 종사할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課하는 學科目도 보통교육의全面에 걸쳐 그 學科의 개요에 통달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해박한 교양의 터전위에 견고한 전공을 세운다는 생각의 시발점으로 해석된다.

(2) 高等師範學校의 位置와 役割

고등사범학교는 文部省 직할의 교원양성 학교로서 사범학교의 상위에 위치하고 교원양성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음은 물론 양성된 교원을 통하여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교육연구의 발달, 중등학교 교원의 자질향상등에 관련하여 고등사범학교의 내용, 연한, 조직의 재편성론이 대두되기에 이르러 고등사범학교를 관계로 하는 문리과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이와 같은 승격의 배경으로는 그 시간에 公私立大學과 高校·專門學校의 증설확장에 따라 高師의 종전 지위가 저하되었다고 보는 생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상의 전환기에서도 고등사범학교는 교사양성학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高師에서는 중등교원의 양성뿐만이 아니고 보통교육의 연구와 現職教育의 터전으로서의 역할도 커다. 高師는 專門學校 수준으로 보아왔으나 專攻科의 경우는 修業年限과 學力이 大學과 동등하고 졸업자는 고등학교 고등과의 教員免許狀이 무시험 점정으로 수여되는 점등으로 學士學位를 주기에 이르렀다.

● 文理科大學

(1) 高師의 大學昇格 운동

日本의 남녀 각 고등사범학교는 전문학교 수준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18년경 각 고등사범학교에 연구과와 전공과를 부설하여 대학수준에 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1919년경 고등교육기관의 증설 확장계획의 실시로 문부성 직할학교였던 고등상업학교, 의학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하고 나아가 고등공업학교, 고등농림학교도 대학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을 때 東京, 廣島 兩高師도 대학승격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고, 1922년에 教育評議會는 東京, 廣島에 文理科를 내용으로 하는 單科大學을 설치하는데 ① 高等師範學校 專攻科를 文理科大學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高等師範學校는 그 부속으로 하여 존치할 것 ② 文理科大學에서는 교육자로서 필요한 특수교육을 실시할 것 ③ 高師 卒業者에게 高等學校 卒業者와 동등한 입학자격을 인정할것의 3가지 조건을 불여 계획을 승인하였다. 文理科大學의 설치는 수용력의 증대를 꾀한 것이 아니고 보다 높은 소양을 갖는 中等教員의 양성을为目的으로 하고 高師의 專攻科를 확충하여 이것을 대학으로 한 것이다. 또한 文理學部를 통합하여 單科大學으로 한 理由는 教員養成의 관점에서였고 獨逸의 諸大學의 文理學部(philosophische Fakultat)를 본받은 것이었다. 또한 中等學校의 教員의 공급상 고등사범학교는 존치하기로 했다. 결국 1929년 4월 官立 文理科大學 官制가 공포되어 문리과대학이 창설되었다.

(2) 文理科 大學의 學科編成과 教育學 教育

1929년 東京 文理科大學은 學則을 제정하고 교육학과,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의 9개 학과를 설치하였다. 설치의 目的이 教員으로서 가장 적당한 교육을 한다에 있었으므로 각과의 專攻과목과 병행하여 國民도덕(1단위), 철학(1), 윤리학(1), 심리학(1), 교육학(2) 등의 公通과목을 과한 점이 특색이었다.

廣島 文理科 大學에서는 교육학과,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

과, 지학과의 9개 학과로 編成하고 共通科目은 東京 文理大와 同一하게 課했다.

• 教育養成의 「開放制」成立

戰後 教育改革中 教員養成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즉 「開放制」 원칙이 확립되었다. 개혁이후에는 사범학교를 비롯한 특정 교원양성학교가 교원양성에 있어서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교육직원 免許法이 제정되고 教育職員 免許狀은 모두 동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수여하기로 되었다. 따라서 國公私立 구별없이 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同法의 기준에 달하는 단위를 이수하면 상응하는 교육직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직원 양성의 5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免許法의 「教育職員」은 종전「教員」이라는 용어변경이 아니고 다른바 교원외에 校長·教育長·指導主事(장학사)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新制大學으로 개편된 종전의 교원양성기관이나 신설된 기타의 大學 教育部도 상당충실하면 일반적인 교원외에 校長·指導主事 및 教育長의 양성과정을 병행하여 가지는 교육직원 양성기관이라 불리우게 돼야 한다.

② 모든 教育職員은 그 職에 대하여 전문가이

〈表-1〉 教育職員 免許法에 따른 中·高等學校 教師 資格基準

所要 資格 種類	基 確 資 格	大學에서 最低履修單位數			
		一般教育		專門科目	
		科 目	教科科目	教職科目	
中 學 校 教 諭	1 級普通 免許狀	學士學位 所有할 것.	36	40	14
	2 級普通 免許狀	大學에 2年以上 在學하고 62單位 (2單位는 體育)以上을 取得할 것.	18	20	10
高 等 學 校 教 諭	1 級普通 免許狀	① 碩士學位를 所有할 것. ② 大學의 專攻科 또는 文部大臣이 인정하는 그 이상에 상당하는 課程에서 1년以上 在學하고 30單位 以上을 取得할 것.	36	62	14
	2 級普通 免許狀	學士學位 所有者	36	40	14

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구상 免許法의 基準은 정해졌다. 따라서 他大學과 같이 學科過程에 일 반교양과목과 專門教科의 일정한 단위외에 教職에 관한 과목의 단위를 요구한다. 종전과 같이 오직 일반심리학이라든가 철학적 교육학 교육사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학생의 이해, 학교종별 직종별로 전개되는 전문적으로서의 직견과 기술을 지니게 하기 위한 것이며 教育職員養成의 立場에서 말하면 專門教育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③ 免許法은 모든 教育職員은 대학에서 양성함을 원칙으로 했다. 簡易課程 또는 現職者를 위한 使法도 설정되었으나 모두 大學 4년의 정규과정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양성과정의 기준이 세워졌다.

④ 免許法은 免許狀授與에 있어서 양성기관에서 일정한 단위를 이수하는 방법과 教育職員 檢定에 의한 방법 두 종류로 정했다. 後者は 반드시 대학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대학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학이외의 기관에서 행할때는 대학교육의 기준에 따라 大學의 지도와 승인하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⑤ 免許法에서는 授與權의 地方委任이 되었다. 授與條件은 法律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보통은 대학에서 발행한 單位履修에 대한 증명서 내용이다. 授與權者는 이 증명서가 조건에 합당하면 이의 없이 免許狀을 발급해야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免許法은 教職의 專門性에 관한 주장과 보장, 교원양성의開放制原則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日本國 教育職員의 자질유지와 향상은 대학의 교육에 달려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免許法은 몇 차례 개정되고 1954년에는 校長, 教育長, 指導主事의 면허장이 폐지되었다. 이것은 그때까지의 부분적 수정과는 달리 教職의 專門性의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개정이었다. 또한 免許法의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新制大學의 내용, 현직교육의 운영실태, 소학교(국민학교) 교원양성의 특수화경향, 나아가서는 양질의 교원학보, 교원수급 등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면서 교원양성이 실시되었다. 교육직원 면허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사자격기준과 理科免狀 취득에 소요되는 教職專門科目 내용은 각각 <표-1>, <표-2>과 같다.

• 教員養成 大學 · 學部

(1) 發 足

1948년 新制國立大學 實施要綱에 의해서 一府顯一大學案이 나오고 이것을 근거로 學藝大學 및 學藝學部 또는 教育學部에서 교원양성을 하기로 하였다. 이때의 사범학교, 청년사범학교 등이 전문학교 수준이 되어 있었던 것을 계기로 일제히 新制大學으로 승격하기에 이르렀으며 3 가지 유형으로 개편되었다. 즉 新制大學에서의 교원양성을 주로 하는 조직으로서 單科 學藝大學, 學藝學部, 教育學部(教員養成이 주목적이 아닌 學部포함)로 발족하였다. 이 가운데 教育學部를 설치한 大學은 舊制 帝大, 高師를 모체로 한 3개 대학과 사범 및 청년사범을 모체로 한 교원양성이 주목적인 教育학부 등이다.

東京教育大, 廣島大, 金擇大는 教育學部, お奈の水女子大에는 文教育學部를 설치했고 廣島大는 교원양성을 주로하는 조직도 포함하고 金擇

大는 교원양성을 주로하는 教育학부가 되었다. 교원양성을 주로하는 教育학부가 설치된 대학에는 舊制高校를 모체로 하는 문리학부 또는 인문학부, 법문학부, 이학부 등이 설치되어 이들 學部의 협력하에 교원양성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원양성제도의 개정에 있어서 美國의 教育使節團의 영향력이 크게 주효한 것은 물론이다.

(2) 教員養成大學 發足後의 諸問題

교원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은 교원양성을 主로하는 학예대학 기준이 마련되었다. 일반교양과목, 교과전문과목, 교직전문과목의 각각에 수업과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것들은 교육과정 최저기준으로 법제화한 것이 교육직원 면허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고 新制大學에서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본규정이 된 것이다.

單科學藝大學은 종합대 내의 학예학부가 타학부생을 위하여 일반교육 교직교육을 담당한데 비하여 타학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고 이것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단, 일반교육을 담당하고 문리학부적인 기능을 덧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학부와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종합대의 학예학부는 타학부의 일반교육과 교직원육을 겸하여 담당하므로써 문리학부와 교육학부의 양기능을 미분화 포괄한 조직이었다. 교육학부는 일반교육을 위시하여 교

<表-2> 理科免狀 取得에 所要되는 教職專門科目 内容

教職에 關한 免許狀의 種類	専門科目	最 低 修 等 單 位 數				
		教育原理	教育心理學 青年心理學	理科教育法	道德教育의 研 究	教育實習
中 學 校	1給普通免許狀	3	3	3	2	2
	2給普通免許狀	2	2	2	1	2
高等 學校	1給普通免許狀	3(2)	3(2)	3(2)	-	2(1)
	2給普通免許狀	3(2)	3(2)	3(2)	-	2(1)

()는 理科에 關한 他専文科木 單位로 代替된 나머지의 履修해야 할 單位數를 表示함.

가령 高1給免許狀 取得에 必要한 教職專門科目 最低 14單位 속에는 最小限 教育原理, 教育心理, 青年心理, 理科教育法이 各各 2單位와 教育實習 1單位가 포함되어 한다.

과에 관한 전문과목의 상당한 부분을 문리학부 등 타학부에 의존하고 교직에 관한 전문과목(교재연구·교과교육법을 포함) 음악, 미술, 보건체육, 가정, 직업 등을 주체로 하는 조직이었다. 때문에 교육학부에 두는 교과에 관한 강좌는 교과교육학을 중핵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大學에서 교원양성의 내실을 다지는 도상에서 國民學校教科에 관한 전문과목 교재연구, 중학교의 교과교육법 등을 어떻게 충실히 시킬 것인가가 큰 문제였다. 법제적으로 정한 과목 단위만은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교원양성 방법에 대한 반성은 일찍부터 대두 되었고 이에 관련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 맷 는 말

지금까지, 歷史的으로 변천된 日本의 教員養成制度와 過程을 分析 살펴보았다.

세계 각국이 良質의 教員養成을 為해 과감한 투자와 아울러 각종 教育改革을 시도하고 있는 때에 가까운 이웃 日本의 教員養成制度와 過程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教員養成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日本의 교원양성은 ①開放制 ②教員養成을 대학수준으로 승격 ③現職教育의 조직화

(교원대학 설치등) 등을 골자로 시행되고 있으며, 舊師範學校는 교원양성을 주로하는 대학 또는 학부로서 대학수준이 되었고, 특히 國民학교·중학교의 教員計劃養成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開放制原則에 의해서 많은 일반대학이 教職課程을 설치하여 教員免許狀을 취득시키고 있으며, 이 教職課程設置는 끝내는 大學의 간판의 하나로 삼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大學間의 격차와 더불어 免許狀 남발에 의한 教員需給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教職教育의 主柱인 교육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가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目的養成의 弊害를 여하히 시정할 것인가? 認定水準을 높여야 할 것인가? 教師로서의 實務訓練을 主로 하는 것은 教育實習에서인가 아니면 試補制定에서인가의 문제, 나아가서는 教職課程을 大學에서 履修시키는 대신 大學의 課修了者에 한하여 教職訓練에 課하는 것이 보다 좋은 教師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등이 당면과제로 남아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教員養成機關이 교원양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교원을 많이 길러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主要外國의 교원양성제도 및 과정의 비교분석·연구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바로잡음

『과학과기술』지 4월호 10페이지의 편집자註와 62페이지의 편집자註가 서로 바뀌었으므로 바로 잡읍니다.

—1초당 220억회 깜박이는 레이저—

미국 GTE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신용 레이저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1초당 220억회를 깜박일 수 있어 GTE가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록보다 25%나 더 빠르다.

이 작은 반도체 레이저는 초고속의 신호등처럼 빛의 펄즈

를 발생해서 디지털화된 소리, 비디오 또는 데이터를 광섬유망에 태울 수 있다. GTE의 이 새로운 장치는 너무나 빨라서 1초당 10세트의 대형백과사전의 내용을 전송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 장치의 광범위한 응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매서추세츠주 월삼소재의 GTE 선임과학자인 로버트 올산스키는 “우리가 현재 모색하고 있는 주요한 상용응용은 광섬유에 비디오 신호를 태우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른바 레이저 다이오드로 불리는 이 장치는 또 미래의 수퍼컴퓨터를 가속시켜 한 회로판에서 다른 회로판으로 보다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전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